

에이스운전자상해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제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매제한 : 2009년 8월 1일 이전 자동갱신 특약 첨부 계약의 갱신에 한해 판매함

나. 상품의 특이사항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범위는 단순히 교통 상해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별급,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등 운전자 비용손해까지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최대 3년), 보험료 납입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1년	일시납, 2회납, 4회납, 12회납
2년, 3년	일시납

- 3)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4) 일부 담보 판매중지 및 전환에 관한 사항 (자동갱신계약 포함)
 - ① 판매중지 : 교통상해의료실비, 운전면허정지비용, 운전면허취소비용, 생활안정지원금, 차량대체비용, 긴급(견인)비용
 - ② 전환판매 : 방어비용(정액형)→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형)
 형사합의지원금(정액형)→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실손형)
 - ③ 적용일자 : 2011년 7월 1일부터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 지급사유

구분	담 보	내 용
기 본	교통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교통상해입원일당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교통상해소득보상금	교통상해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을 경우
특약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주말교통상해시(금요일 오후 포함)
	벌금	자동차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확정 판결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 운전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상

주) 1. 교통사고라 함은

- ①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 ② 운행중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자동차(운행중인 자동차의 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자동차의 화재,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를 말합니다.

2.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1) 상해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2) 상해후유장해보험금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 3) 입원일당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입원일당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4) 벌금 :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 5)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 70일 ~ 139일 진단시 2천만원, 140일이상 진단시 3천만원을 한도로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다수계약(각종 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6)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약식 기소는 제외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단, 다수계약(각종 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 보상합니다.

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교통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비, 기타상해담보의 경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하역작업으로 인해 생긴 손해
- 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으로 인해 생긴 손해

② 운전자비용손해담보의 경우

- 보통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사항
-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나. 보험료 산출 예시

가입 예) 보험기간 1년, 교통상해급수 1급, 40세 남자, 월납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3억원
	교통상해소득보상금	1억원
	교통상해입원일당	3만원
선택계약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별금	2,000만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200만원
보험료		7,960월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